

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6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9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제도화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(제1조)
- 나.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절차·관리·정산 등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.(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2021년 당초예산에 33,250천원 반영 예정
- ※ 2020년 예산 33,250천원 계상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2020. 6. 22. ~ 7. 12.(20일) 제출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이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”이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“통일자문회의”라 한다)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평창군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·사무 처리) ① 대행기관장인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2. 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3.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4.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

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.

제4조(사무지원 및 준용 등)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인력 등 지원)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공공시설 이용)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한다.

제7조(포상)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「평창군포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

○ 제9조(사무기구)

-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,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

○ 제3조(대행기관 등)

-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(이하 "대행기관"이라 한다)은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재외공관으로 한다.
-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(이하 "지역회의"라 한다)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 - 3.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

○ 제30조의2(경비의 지원)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·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붙임 2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「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관련,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연평균 5천만원 이하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과장 최찬섭
연락처	(033) 330 - 2210